

# MSC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적격성 요구사항

(MSC Forced and Child Labour Eligibility Requirements)



버전 2.0, 2025 년 12 월 18 일

## 저작권 공지

해양관리협회(MSC, Marine Stewardship Council)의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적격성 요구사항 (Forced and Child Labour Eligibility Requirements)” 및 그 내용은 “MSC”에서 저작권을 보유합니다.  
© “Marine Stewardship Council” 2025. All rights reserved.

본 요구사항의 공식 언어는 영어이며, 최종 버전은 MSC 웹사이트([msc.org](http://msc.org))에 유지된다. 사본, 버전 또는 번역본 간에 불일치 사항은 **영어 최종 버전**을 참조하여 해결해야 한다.

MSC 는 어떤 형태로든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의 수정을 금지한다.

해양관리협회(MSC, Marine Stewardship Council)

Marine House

1 Snow Hill

London EC1A 2DH

United Kingdom

전화: + 44 (0) 20 7246 8900

팩스: + 44 (0) 20 7246 8901

이메일: [socialpolicy@msc.org](mailto:socialpolicy@msc.org)

## 본 요구사항에 대한 책임

본 요구사항에 대한 책임은 해양관리협의회(MSC)에 있다.

독자는 본 요구사항 및 기타 관련 문서의 가장 최신판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개정된 문서와 MSC 에서 제공하는 문서의 전체 목록은 MSC 웹사이트([msc.org](https://www.msc.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발행 이력

버전	공표일	내용
1.0	2022 년 10 월 26 일	최초 발행.
2.0	2025 년 12 월 18 일	제 3 자 노동 심사와 관련된 요구사항 삭제. 문서명을 'MSC 노동 적격성 요구사항(MSC Labour Eligibility Requirements)'에서 'MSC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적격성 요구사항(MSC Forced and Child Labour Eligibility Requirements)'으로 변경.

## 해양관리협의회 (MSC, Marine Stewardship Council)

### 비전

MSC의 비전은 오늘과 내일, 그리고 다가올 미래 세대를 위해 풍부한 바다 자원을 보전하는 것이다.

### 미션

MSC의 미션은 MSC 에코라벨과 수산물 인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속가능한 어업 방식을 인정 및 보상하고, 소비자들의 수산물 구매에 영향을 미치며, 수산물 시장이 지속가능 하도록 우리의 파트너들과 함께 노력함으로써, 전 세계 바다의 건강에 기여하는 것이다.

## 일반 정보

MSC 는 지속가능 어업과 지속가능 수산물 유통 관리(CoC, Chain of Custody)를 보증하기 위한 위한 표준을 개발했다. MSC 어업 표준은 어업이 지속가능하고 적절히 관리된 자원에서 생산된 수산물임을 주장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요구사항을 제시한다. MSC CoC 표준은 MSC 에코라벨이 표기된 수산물이 MSC 어업 표준에 따라 인증된 지속가능한 어업에서 유래했음을 보장한다. CoC 표준은 인증 제도를 운영하는 일부 단체에서 사용 가능하다. 현 시점 기준으로 수산양식관리협의회 (ASC, Aquaculture Stewardship Council)는 ASC 인증 양식장에서 생산된 모든 인증 수산물에 대해 CoC 표준을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 시행 일정

### MSC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적격성 요구사항 v2.0 발효일

공표일(Publication date): 2025 년 12 월 18 일

발효일(Effective date): 2026 년 6 월 18 일

적합성 평가 기관(CAB)은 MSC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적격성 요구사항 v2.0 을 이용하여, 어업 및 CoC 인증 신청자와 인증서 보유자가 MSC 의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관련 적격성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CAB 은 본 요구사항을 발효일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 다만, CAB 과 고객이 사전에 적용할 준비가 완료된 경우, 공표일을 기준으로 본 요구사항을 사용할 수 있다.

## 검토

MSC 는 본 문서에 대한 의견을 환영하며, 접수된 의견은 차기 검토 과정의 일부로 고려된다. 의견은 [socialpolicy@msc.org](mailto:socialpolicy@msc.org) 로 제출할 수 있다.

## 본 문서에 관하여

###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적격성 요구사항

본 문서는 MSC 심사를 수행하는 모든 CAB 에 대한 요구사항과, MSC 어업 인증 및/또는 CoC 인증을 받고자 하는 어업 및 공급망 조직에 적용되는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관련 의무적 적격성 요구사항을 포함한다.

## 지침

요구사항의 해석 및 적용을 지원하기 위해 비의무적 지침을 포함한다. 특정 항목 또는 개별 조항의 내용과 관련된 지침은 해당 항목 또는 조항의 말미에 글 상자 형태로 제시된다.

## 예외 조치(Derogations)

예외 조치란 MSC 요구사항을 일시적으로 다르게 적용하거나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임시 규범 조치이다. 예외 조치는 편집상 오류가 발생한 경우, 불가항력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 요구사항의 취지가 더 이상 본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MSC 의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제공될 수 있다. 또한 정책 변경을 시험하거나 규범 문서의 개정판 공표 시 이행 시기를 조정하기 위한 조항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모든 예외 조치는 MSC 웹사이트의 공개 기록(public log)을 통해 게시된다. MSC 는 CAB 이 관련 예외 조치를 반드시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 목차

1	범위.....	8
2	규범 문서.....	8
3	모든 MSC 인증 신청자 및 인증서 보유자에 대한 적격성 요구사항.....	8
3.1	강제노동 또는 아동노동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을 것.....	8
4	해상 인증 신청자 및 인증서 보유자에 대한 추가적인 적격성 요구사항.....	11
4.1	해상 인증 신청자 및 인증서 보유자는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정책 진술서를 제출할 것.....	11
5	육상 CoC 인증 신청자 및 인증서 보유자에 대한 추가적인 적격성 요구사항....	12
5.1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정책 진술서를 제출할 것.....	13

## MSC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관련 적격성 요구사항

### 1 범위

MSC 어업 및/또는 CoC 표준에 따라 평가 및/또는 심사를 받고 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모든 단체는 본 문서의 관련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2 규범 문서

아래의 문서들은 본 문서에 인용됨으로써 MSC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적격성 요구사항 v2.0의 일부를 구성한다.

각 문서의 최신 유효 버전이 적용되며, 해당 문서는 다음과 같다.

- a. MSC At Sea Forced and Child Labour Eligibility Requirements Reporting Template  
(국문 번역본: MSC 해상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적격성 요구사항 보고 양식)
- b. MSC Chain of Custody Forced and Child Labour Eligibility Requirements Reporting Template  
(국문 번역본: MSC CoC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적격성 요구사항 보고 양식)
- c. MSC Fisheries Certification Process
- d. MSC General Certification Requirements
- e. MSC-MSCI Vocabulary

### 3 모든 MSC 인증 신청자 및 인증서 보유자에 대한 적격성 요구사항

#### 3.1 강제노동 또는 아동노동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을 것

3.1.1 어업 또는 CoC 인증 신청자 또는 인증서 보유자는 최근 2년 이내 강제노동 또는 아동노동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

##### 지침 3.1.1

강제노동: 강제노동에 대한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의 정의는 다음의 두 개 핵심 요소로 구성된다.

- 금전적 제재, 신체적 처벌, 권리 및 특권의 상실, 또는 이동의 제약(예, 신원 문서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불허)을 암시할 수 있는 처벌의 위협 하에서 제공된 노동 또는 서비스
- 비자발적 노동

ILO가 강제노동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간주하는 기타 비윤리적 관행에는 채무 속박(debt bondage), 인신매매, 기타 형태의 현대판 노예제도가 포함된다.

아동노동: ILO는 아동노동을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또는 도덕적으로 아동에게 위험하고 해로운 일' 또는 '아동의 학교 교육 기회 박탈, 학업 중단, 또는 학업과 과중한 노동을 병행하도록 요구함으로써 학업을 방해하는 노동'으로 언급한다.

이와 관련된 유죄판결은 강제노동법 또는 아동노동법 위반과 관련하여 유죄를 확정하는 법적 절차의 공식적 결과를 말한다.

3.1.1.1 MSC 표준 따른 인증 신청자 또는 인증서 보유자는 다음을 준수해야 한다:

- a. 최근 2년 이내 강제노동 또는 아동노동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단체를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 b. 최근 2년 이내 강제노동 또는 아동노동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단체와의 모든 연관성을 선언해야 한다.
- c. 어업 및 해상 CoC 인증 신청자와 인증서 보유자의 경우, 최근 2년 이내 강제노동 또는 아동노동으로 인한 유죄 판결이 있었는지 여부를 MSC 해상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적격성 요구사항 보고 양식의 항목 1 (강제노동 또는 아동노동 관련 유죄 판결)에 기록해야 한다.
- d. 강제노동 또는 아동노동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단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단체를 2년간 인증서, 평가 대상(Unit of Assessment, UoA), 또는 인증 단위(Unit of Certification, UoC)에서 제외하거나, 무효화하거나, 삭제해야 한다.
- e. 단체를 제외(또는 무효화)한 경우, 해당 사실을 즉시 적합성 평가 기관(CAB)에 통지해야 한다.

#### 지침 3.1.1.1

본 요구사항은 강제노동 또는 아동노동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법적 주체(예: 개인 또는 기업)와 관련된 개별 선박이나 개별 사업장, 또는 선박이나 사업장의 집단에 적용된다. 본 요구사항은 인증 신청자 또는 인증서 보유자가 강제노동 또는 아동노동 관련 법률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단체를 포함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죄 판결로 이어진 위반 행위는 반드시 평가 대상(UoA) 내에서 발생했을 필요는 없다.

이 때 "단체(entity)"란 인증 신청자 또는 인증서 보유자에 포함된 모든 사업장 또는 선박을 의미하며, MSC CoC 또는 어업 인증서 보유자(고객 또는 고객 그룹)의 구성원으로서 해당 사업장 또는 선박에 소속되었거나, 해당 사업장 또는 선박에 의해 계약되었거나 하도급된 모든 사업장 또는 선박을 포함한다.

3.1.1.2 적합성 평가 기관(CAB)은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 a. 최초 신청 및 이후의 사후 심사/재인증 심사 시, 인증 신청자 또는 인증서 보유자에 대해 최근 2년 이내 강제노동 또는 아동노동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단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해야 한다.
- b. 다음의 경우 인증 신청자 또는 인증서 보유자를 심사, 평가 또는 인증 대상에서 부적격으로 간주해야 한다.
  - i. 인증 신청자 또는 인증서 보유자(고객 또는 고객 그룹)에 속한 단체가 최근 2년 이내 강제노동 또는 아동노동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 ii. 해당 단체가 신청서 또는 인증서에서 철회되지 않은 (또는 인증서 가입 상태가 무효화되지 않은) 경우
- c. 인증서에 포함된 단체가 강제노동 또는 아동노동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 i. 인증서 보유자가 유죄 판결을 받은 단체를 제외하였는지를 검토하고 확인해야 하며, 해당 단체가 유죄 판결일로부터 2년간 인증서에서 계속 제외되어 있거나, 또는 인증서의 가입 상태가 무효화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지침 3.1.1.2.c.i

유죄 판결을 받은 단체가 제외되어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정보의 예시로는 업데이트된 선박 목록 또는 업데이트된 고객 그룹 구성원 정보가 있다.

CoC 인증의 경우, 해당 단체의 인증서 상태를 무효화함으로써 인증서에서 제외할 수 있다.

- ii. 어업의 경우, MSC Fisheries Certification Process(FCP)에서 요구하는 핵심 추적 요인 및 관련 위험을 검토하고 필요 시 업데이트해야 한다.
- iii. 어업의 경우, FCP에 따라 추적성 위험이 적절히 관리 및 완화되고 있음을 확인해야 한다.
- iv. 어업의 경우, FCP에 따라 추적성 시스템에 대한 판단(determination)을 검토하고 필요 시 업데이트해야 한다.

지침 3.1.1.2.ii-iv

FCP 최신 버전이 적용된다.

- 추적성 요인에 관한 요구사항은 FCP section 7.5.10을 참고한다.
- 추적성 위험 관리 및 완화에 관한 요구사항은 FCP section 7.17을 참고한다.
- 추적성 시스템 판단에 관한 요구사항은 FCP section 7.17을 참고한다.

- v. 어업의 경우, 필요에 따라 선박 목록을 업데이트하고, 이를 scheme database 에 업로드해야 한다.
- vi. 어업 및 CoC 의 경우, 필요에 따라 인증서 상태를 scheme database 에서 업데이트해야 한다.
- vii. 어업 및 CoC 의 경우, 기타 관련 인증 문서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 d. 인증서 보유자가 유죄 판결 받은 단체를 인증서에서 철회할 수 없거나, 또는 해당 단체의 인증서 가입 상태를 무효화할 수 없는 경우, MSC General Certification Requirements(GCR)의 Section 7.4 (Suspension or withdrawal of certification)에 따라 해당 인증서 보유자를 정지(suspend)해야 한다.

## 4 해상 인증 신청자 및 인증서 보유자에 대한 추가적인 적격성 요구사항

### 4.1 해상 인증 신청자 및 인증서 보유자는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정책 진술서를 제출할 것

#### 지침 4.1

“해상 인증 신청자 및 인증서 보유자”란 호수 및 하천에서의 조업을 포함하는 어업 인증 신청자 및 인증서 보유자, 그리고 해상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CoC 인증 신청자 또는 인증서 보유자(예: 가공선, 운반선 등)를 의미한다.

- 4.1.1 인증 신청자 또는 인증서 보유자(고객 또는 고객 그룹)는 다음을 준수해야 한다:
- a. MSC 해상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적격성 요구사항 보고 양식의 항목 2 (인증서 보유자의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정책, 관행 및 조치)에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의 부재를 보장하기 위해 시행 중인 정책, 관행 및 조치를 문서로 기록해야 한다. 또한 어업의 경우 작성된 양식을 고객 문서 체크리스트(Client Document Checklist) 제출 시점에 CAB 에 함께 제출해야 하며, 해상 CoC 단체의 경우 심사 당일 또는 그 이전까지 CAB 에 제출해야 한다.
  - b. 해당 양식에는 인증 범위에 포함된 모든 단체, 사업장 및 계약 업체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
  - c. 노동 관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MSC 해상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적격성 요구사항 보고 양식의 항목 2 를 업데이트하고, 이를 CAB 에 제공하여 scheme database 에 업로드 되도록 해야 한다.

- d. 각 사후 심사 시, MSC 해상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적격성 요구사항 보고 양식의 '인증서 보유자의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정책, 관행 및 조치' 항목에 기재된 정보를 검토해야 하며,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양식을 업데이트해야 한다.

#### 지침 4.1.1

어업 내에서 노동 관행의 차이가 있을 경우, 인증 신청자 또는 인증서 보유자는 편의에 따라 별도의 양식을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양식 사용 개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scheme database 는 여러 개의 양식을 업로드할 수 있다.

4.1.2 적합성 평가 기관(CAB)은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 a. MSC 해상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적격성 요구사항 보고 양식의 항목 2 에 대해 모든 내용이 작성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 b. MSC 해상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적격성 요구사항 보고 양식의 항목 2 에 인증서 범위로 포함된 모든 단체, 사업장 및 계약 업체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음을 인증 신청자 또는 인증서 보유자에게 확인해야 한다.
- c. 인증 신청자 또는 인증서 보유자가 작성한 MSC 해상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적격성 요구사항 보고 양식(항목 2 포함)을 scheme database 에 업로드해야 하며, (어업의 경우에 한하여) 공개 인증 보고서(Public Certification Report)와 동시에 MSC 웹사이트에 공개한다.
- d. 인증 신청자 또는 인증서 보유자가 '인증서 보유자의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정책, 관행 및 조치' 항목을 작성하지 않았거나 CAB 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인증 신청자 또는 인증서 보유자를 평가 또는 인증 대상에서 부적격으로 간주해야 한다.

#### 지침 4.1.2

CAB 은 인증 신청자 또는 인증서 보유자가 제출한 '인증서 보유자의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정책, 관행 및 조치' 항목에 포함된 정보에 대해 심사를 수행할 의무가 없다.

어업의 경우, MSC 해상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적격성 요구사항 보고 양식('인증서 보유자의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정책, 관행 및 조치' 항목 포함)은 고객 문서 체크리스트와 동시에 제출되어야 하며, 공개 인증 보고서(Public Certification Report)가 공표되는 시점에 MSC 웹사이트에 공개된다.

해상 CoC 관련 보고 양식은 MSC 웹사이트에 공개되지 않는다.

## 5 육상 CoC 인증 신청자 및 인증서 보유자에 대한 추가적인 적격성 요구사항

## 지침 5

인증 신청자 또는 인증서 보유자가 해상 운영(예: 가공선)인 경우, MSC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적격성 요구사항의 Section 4 (해상 인증 신청자 및 인증서 보유자에 대한 적격성 요구사항)를 참고한다.

### 5.1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정책 진술서를 제출할 것

5.1.1 Section 5의 요구사항은 CoC 인증 범위에 다음의 활동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모든 인증 신청자 또는 인증서 보유자에게 적용된다.

- a. 위탁 가공(Contract processing)
- b. 포장 또는 재포장(Packing or repacking)
- c. 1차 가공(Processing primary)
- d. 2차 가공(Processing secondary)
- e. 보존 가공(Processing preservation)
- f. 기타 가공(Processing other)

#### 지침 5.1

CoC 인증 범위에 a-f 활동 중 어느 하나라도 포함되지 않는 CoC 인증 신청자 또는 인증서 보유자는 본 Section에 명시된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적격성 요구사항을 충족할 의무가 없다.

비인증 하도급업체의 경우, b-f 활동 중 어느 하나라도 수행하는 하도급업체에 한하여 본 Section에 명시된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적격성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5.1.2 인증 신청자 또는 인증서 보유자는 다음을 준수해야 한다:

- a. 'MSC CoC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적격성 요구사항 보고 양식'을 사용하여,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의 부재를 보장하기 위해 시행 중인 정책, 관행 및 조치를 상세히 기술해야 한다.
- b. 인증서별로 1개(또는 필요에 따라 복수)의 양식을 작성해야 한다.
- c. 해당 양식에 제공된 정보가 인증 범위에 포함된 모든 사업장 및 하도급업체를 포괄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 지침 5.1.2.c

하도급업체를 인증 신청자 또는 인증서 보유자와 함께 포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 해당 하도급업체가 별도의 양식을 작성할 수 있다.

- d. 보고 양식에 제시된 작성 지침을 따르고, 모든 항목을 작성해야 한다.

- e. CoC 심사 당일 또는 그 이전까지 보고 양식의 작성을 완료해야 한다.
- f. CoC 심사 절차의 일환으로, 매년 양식에 기재된 정보를 검토하고,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필요 시 이를 업데이트해야 한다.
- g. 양식의 내용은 신규 사회 감사 프로그램 참여 또는 CoC 인증 범위 변경 등과 같은 모든 변경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5.1.3 적합성 평가 기관(CAB)은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 a. CoC 심사에 앞서 가능한 한 신속히 인증 신청자 또는 인증서 보유자에게 보고 양식의 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 b. CoC 심사 당일 또는 그 이전까지 보고 양식이 완전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 c. 인증 신청자 또는 인증서 보유자가 보고 양식 작성을 완료했음을 scheme database 에 기록해야 한다.
- d. 작성 완료된 보고 양식을 scheme database 에 업로드해야 한다.
- e. 5.1.2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인증 신청자 또는 인증서 보유자를 CoC 심사 또는 인증 대상에서 부적격으로 간주해야 한다.
  - i. 인증 신청자가 CoC 심사 대상에서 부적격이 되는 경우, CAB 은 심사 절차를 계속 진행해서는 안 된다.
  - ii. 인증서 보유자가 CoC 인증 대상에서 부적격이 되는 경우, CAB 은 해당 인증서 보유자를 정지하고 GCR Section 7.4(Suspension or withdrawal of certification)에 명시된 절차를 따라야 한다.

### 지침 5.1.3

보고 양식은 심사 이전에 인증 신청자 또는 인증서 보유자에게 사전 전달되어, 심사 전 양식을 작성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CAB 은 양식에 기재된 답변의 정확성을 검증할 책임은 없으며, 양식이 완전하게 작성되었는지, 그리고 모든 질문에 대해 정보가 제공되었는지 여부만을 확인한다.

---

끝

---